

# 【 학점은행제 소개 】

## 1.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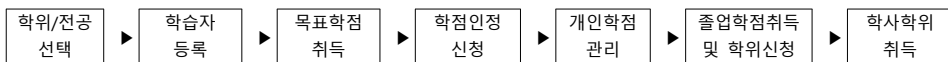
## 2. 학위수여조건

학위란, 대학교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 1)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호]
- 2)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전공을 확인하여 학습자 등록 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구분	전공	교양	총이수학점
학 사	6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45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학점취득 시 주의사항

구분	내용	
학점제한	1년동안 인정받을수 있는 최대학점 : 42학점	
	1학기동안 인정받을수 있는 최대학점 : 24학점	
1개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학사	전문학사
	105학점	60학점
학점인정 최소요건은 출석률 80%이상, 성적 60점이상 전적대학(전문대학/중퇴대학)에서 받은 과목과 중복 수강할 경우 학점인정 안됨		

※ 1년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의미함.

## 3. 학위종류별 자격증학점인정 기준

- 1) 자격증 인정은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2)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하다. 이때 전공과 연계되는 자격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전문학사	학사	비고
2개	3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최대 1개 타 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 ■ 학생들이 주로 취득하는 자격증

구분	자격증명	인정학점
전공필수	섬유디자인 산업기사	16
	한복산업기사	16
	패션디자인산업기사	16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16
	의류기사	20
일반선택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16
	워드프로세서 1급	4
	컴퓨터활용능력 1급	14
	컴퓨터활용능력 2급	6

※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이 **41학점 이상** 취득되어 있어야함.

#### 4. 성적부여 및 학점인정 기준

##### 1) 성적부여기준

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점수	레포트	합계
평가점수	30점	30점	20점	20점	100점

##### 2) 학점인정 기준

-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며 전체 출석률 80% 이상이 되어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총점은 60점 이상까지 인정되며 아래의 기준으로 등급이 평가 됩니다.

등급	A+	A	B+	B	C+	C	D+	D	F
점수	95점이상	90~94점	85~89점	80~84점	75~79점	70~74점	65~69점	60~64점	60점미만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없음

##### 3) 성적 " F " 처리

정기시험( 중간, 기말시험 )에 모두 결사하였거나 출석미달인 경우  
( 출석의 경우 3일 이상 결석시 출석미달로 인정되고 지각3회는 1회 결석으로 간주 한다. )

#### 5. 학습자등록 외 각종 신청관련사항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b.or.kr/creditbank>)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해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 학습자 등록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졸업자의 경우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대학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학습자 등록 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관련사항은 기간별 별도의 공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서류를 취할 후 접수 될 예정입니다.



#### 6. 에스모드 서울 학습과정 평가인정과목

번호	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 기간	강의 시간	번호	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 기간	강의 시간
1	전선	남성복구성실습	3	15주	5	13	전필	패션마케팅	3	15주	3
2	전필	서양복식사	3	15주	3	14	전선	패션상품기획	3	15주	3
3	전필	의복과색채	3	15주	3	15	전필	패션소재연구	3	15주	3
4	전필	의복구성I	3	15주	4	16	전선	패션일러스트레이션I	3	15주	4
5	전선	의복구성II	3	15주	5	17	전선	패션트렌드분석	3	15주	3
6	전필	테일러링	3	15주	5	18	전선	플랫폼디자인I	3	15주	5
7	전선	패션드레이핑I	3	15주	5	19	전선	플랫폼디자인II	3	15주	5
8	전선	패션드레이핑II	3	15주	5	20	전선	피팅테크닉	3	15주	5
9	전선	패션드로잉실습	3	15주	4	21	전선	창작디자인실습	3	15주	5
10	전필	패션디자인론	3	15주	3	22	전선	패션디자인실습II	3	15주	5
11	전선	패션디자인세미나	3	15주	4	23	전선	패션포트폴리오	3	15주	5
12	전선	패션디자인실습I	3	15주	5						

#### 7. 병무안내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아래와 같이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수강 중인 자
- 연기기간 :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http://www.mma.go.kr)) 『입영기일연기·포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기사유 "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 선택  
접수화면에 「학습기관명」 「연락처」 「학습과목명」 「수강기간」 등 입력

※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처리절차 : 지방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학점취득사실, 수강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연기처리 및 결과 통보

※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해외 교육기관 이수자 준비사항

### 1) 허용대상

외국교육기관(외국소재 또는 국내소재 외국인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외국인으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외국교육기관 인정기준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고 해당국 국가기관에 의해 학력인정확인이 가능한 학교이어야 합니다.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으로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외의 사안으로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분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3) 제출서류

구분		고졸	대학(재학/제적)	대졸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내국인)	○	○	○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	○
학력 확인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x
	대학 재적 또는 제적 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x	○	x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x	x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x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x	○	○	
원어인 경우 한글번역공증 각 1부	○	○	○	

※ 학력인정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새터민의 경우 시·군·구 북한일탈주민 거주지 보호 담당관이 발급한 학력확인서만 제출하면 됨.  
(12년제와 관계없이 고졸/대졸이면 가능)

### 4) 각 사례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초·중·고등학교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1.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한글번역공증 각 1통 2.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초·중·고등학교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중간에 전학경험이 있을 경 우)	예) A고등학교에서 B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1.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글번역공증서 각 1통 2. A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or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글번역공증 각 1통 B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글번역공증 각 1통 3.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A, B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외국에서 대학(교)을 졸업한 경우	1. 외국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글번역공증 각 1통 2.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자퇴하고외국에서 고등학교 를졸업한 경우	예)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학기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 1. 한국 당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제적(자퇴) 증명서 1통 2. 외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1학년 2학기~3학년 2학기까지 증명), 한글번역공증 1통 3.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모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동일한 학력임(12년제)을 반드시 인정받아야 함.

※ 졸업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당대학장이 발급한 확인서 및 졸업장으로 대체 가능함.

※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을 위해 전 과정 교육기관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원어일 경우 공증된 번역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5) 학력인정 확인서

국가	발급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중국	서울공자 아카데미	02-3452-6775	2004년 이후 고졸자로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혹은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만 가능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02-738-1038	2012년 이전까지
미국	한미교육위원단 유학상담센터	02-3275-4011 02-3275-4018	
일본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	02-739-7400	
호주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02-2003-0102	
뉴질랜드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뉴질랜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되어 제출 생략 가능 학교조회 불가시 등록불가	
스페인	주한스페인 대사관	02-794-3581~2	
영국	주한영국문화원	02-3702-0600	
필리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현지	"학력(교육과정)인정 확인서" 발급

### 6) 아포스티유(Apostille) 란?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제출 시 해당국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신청 할 수 있음.)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 정부 국무부(Secretary of State)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총 92개국임(2010. 3. 2 기준)